



소비자 정책 세미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

일시. 2022년 9월 15일, 오전10시 30분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사회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임채운(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노용환(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훈(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주최. (사)컨슈머워치



<컨슈머워치 세미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

-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컨슈머워치

- 사회 :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한가?

2022년 9월 15일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 목 차 -

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II 적합업종 제도의 개요와 현황

III 적합업종 제도 관련 이슈와 쟁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 경제위기와 양극화

한국의 IMF외환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 단절적 변화와 초불확실성



단절적 전환기

- 보호주의와 통상장벽
 -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 규제강화와 경쟁제한
 - 상생협력과 갈등해소 ⇒ 사회적 책임
- 급진적 기술혁신과 단절적 시장변화
 - 창조와 선도의 Pioneer Advantage
- 장기지속성장
 - 구조개혁과 산업재편 (大馬必死)
- 균형 분산 경제구조
 -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분수경제

양적 확장기

- 글로벌화와 시장개방
 - 국제 교역과 소비 수요의 급팽창
-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 경제적 기여
- 점진적 기술혁신과 안정적 시장변화
 - 추종과 모방의 Follower Advantage
- 고속압축성장
 - 대량투자와 규모의 우위 (大馬不死)
- 불균형 쏠림 경제구조
 -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TES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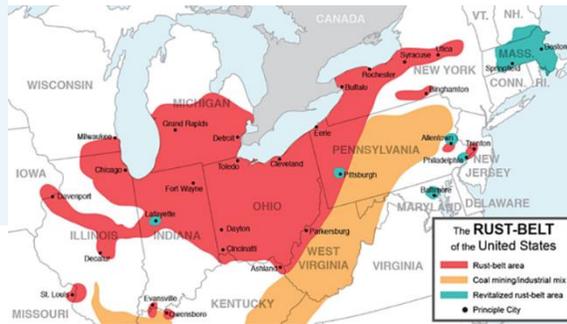


□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

'불균형 경제구조'의 쇠락과 한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 국내 투자 저조 → 낙수효과 실종
- 신규 고용 정체 → 일자리 창출 미흡
- 쏠림현상 가속화 → 자원배분 왜곡
- 부의 불평등 심화 → 경제력 양극화
- 변화 대응력 둔화 → 구조조정 비용



사회적 갈등 촉발

- 독과점력 남용 → 협력기업 부속화
- 일감몰아주기 → 폐쇄적 내부거래
- 무분별 사업확장 → 중기 사업영역 잠식
- 편법적 경영권 승계 → 정경유착
- 계층격차 고착화 → 사회적 일체감 훼손



경제적 활력과 성장동력 저해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불안 증폭

☞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부작용해소 위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대두

□ 한국경제의 구조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시장의 불균형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자원의 쏠림현상 심화되면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가속화
→ 경제력과 부의 고착화로 성장사다리 위축과 사회계층 간 위화감 증폭

수직적 불공정거래

- 수직적 거래관계의 불균형으로 甲乙관계 고착화, 불공정거래 만연으로 경제적 갈등 증폭
→ 중소 협력사의 지속적 경영악화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차단

수평적 불평등경쟁

- 대규모 자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갈등 초래
→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정치적 혼란 가중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와 부작용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불균형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축적되어 구조적 양극화 고착
→ 3'不': 불균형시장, 불공정거래, 불평등경쟁 ⇒ 기업 성장주기 경직화와 소득 순환고리 차단

☞ **기업생태계 약화와 사회건강성 악화**

□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 헌법 제19조 제2항

헌법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의 요지

- ① **균형성장**: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 ② **소득분배**: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 ③ **시장개입**: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
- ④ **상생협력**: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 ⑤ **구조개편**: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 경제민주화의 관점과 입장

	온건론	중도론	강경론
핵심 주장	경제주체간 균형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따른 문제해결에 집중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방지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소득 과세 강화 - 일감 몰아주기 근절 - 부당 단가인하 근절 - 대기업 사업확장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 몰아주기 근절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집단소송제 활성화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출자 제한 - 지주회사 규정 강화 -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119조 2항에 충실한 정책으로, △ 균형성장 △ 적정 소득분배 △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금지 구현하고자 노력 	경제력 약자 보호가 필요하며,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로 가서는 안 되고 문제점을 찾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으며 소유구조 개편으로 경제력 집중 방지를 강조
ESG 관점	이익의 사회환원 → S (CSR)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 S (Citizenship, Compliance)+ G (Inter-Firm Governance Structure)	지배구조 개혁 → 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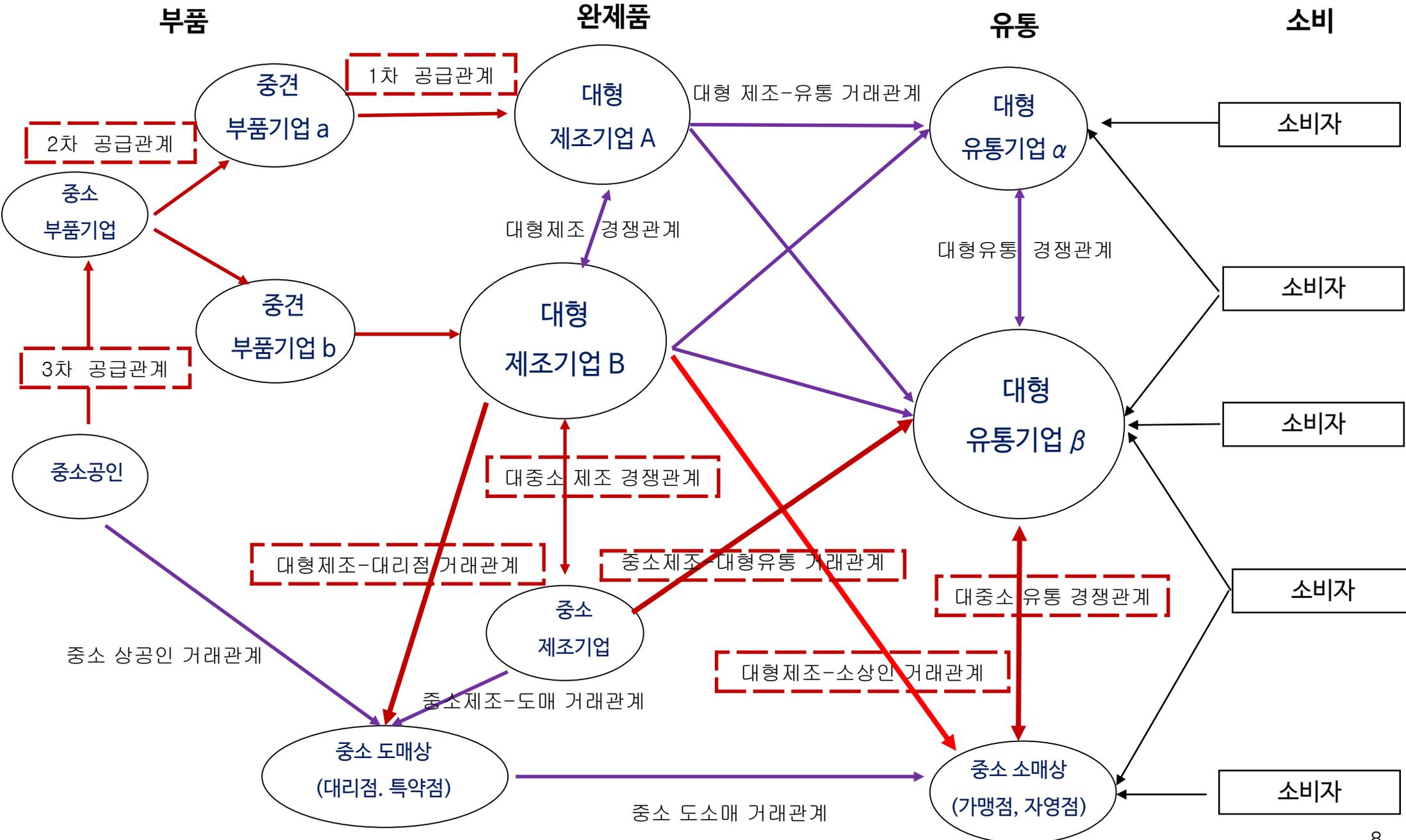
□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상생협력과 ESG

- 자본주의의 진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자본주의”
- 4차 산업혁명과 Open Innovation
 - 효율지향적 독자 고속성장 → 협력지향적 지속 동반성장
- 경쟁전략의 변화
 - 원가 중심의 Fast Follower → 혁신 중심의 First Mover
- 거래관계의 발전
 - 일방적 甲乙 종속관계 → 상호호혜적 파트너 대등관계
- 경제구조의 개혁
 - 대기업 기반 경제 (낙수효과) → 중소기업 기반 경제 (분수효과)
- 기업경영 목표의 전환
 - 단기실적과 이익 극대화 →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 사회적 가치와 상생협력은 시대적 명제!



□ 산업 생태계: 수직적 거래관계와 수평적 경쟁관계의 복합계



□ 수직적 거래관계

○ 제조대기업-납품중소기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 甲乙관계의 전형인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부당인하, 끝없는 CR, 기술·인력탈취 등
- 전속거래와 관련사 일감몰아주기(內製化)로 시장거래 위축

○ 1차 납품중견기업-2·3차 납품중소기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 하도급 甲乙관계의 수직적 파장으로 중·중기업 간의 불평등 계층구조 정착: 낙수효과 차단

○ 제조대기업-중소대리점 (대리점법)

- 제조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Captive Channel 밀어내기, 끼워팔기 등 → 매우 오래된 유통거래 甲乙관계

○ 유통대기업-납품중소기업 (대규모유통업법)

- 유통시장의 독과점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증가: 수수료 인상, 비용 전가, 판촉사원 파견요구, 부당반품 등

○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가맹사업법)

- 협상력과 정보력의 불균형 악용: 공격적 가맹점 확장, 편파적 계약조건, 비용 상승, 리스크 전가, 인테리어 교체요구 등

○ 서비스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법, 단통법, 온플법)

- 서비스대기업(e커머스, 인터넷 포털, 금융기관 등)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 혁신 벤처기업과 전통 영세기업의 갈등: 온라인 플랫폼, 차량공유, 숙박공유, 배달앱 등

☞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진정한 상생협력이 가능한가?

- 기존 거래업체 보호에 따른 신규업체 거래기회 제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

□ 수평적 경쟁관계

○ 제조대기업-제조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적합업종 제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경쟁 →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 적합업종 제도' 실시

○ 제조중견기업-제조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적합업종 제도)

- 대기업 규제로 중견기업 반사이익 → 적합업종 제도의 확대로 중견기업 압박

- 중견기업 육성의 성장사다리 정책 vs. 중소기업 보호정책

○ 유통대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 대형마트 및 SSM의 확산 → 신규출점 및 기존점 영업 규제와 중소상인 지원

○ 유통대기업-도매상·중견상인 (상생협력법, 적합업종 제도)

- 도매업, MRO 등에서 대기업과 도매상인 간의 갈등 고조 →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은 유통합리화 정책과 충돌

○ 프랜차이즈-자영업자·소상공인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적합업종 제도)

- 프랜차이즈 대·중견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 → 가맹점 출점 규제 도입

-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중견기업이 시장지배자 → 중견기업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의 상충

○ 온라인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협력법, 온플법)

- 카카오, 네이버의 무차별적 사업확장 → 영세 사업자 및 자영업자 쇠락과 갈등

☞ 수평적 경쟁관계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한가? 경쟁제한이 중소기업의 자생력 기여?

← WTO 및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소비자복지 저하, 중소상인 간 과당경쟁



적합업종 제도의 개요와 현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기로 결정

-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로 결정

○ **대기업의 자율적 준수노력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 병행**

-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적합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R&D, 협동화사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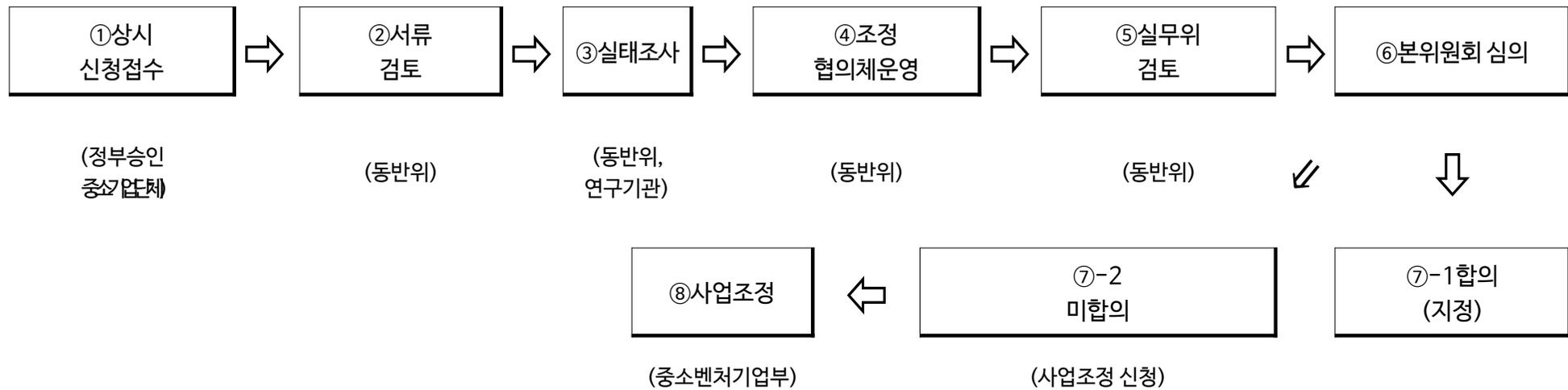
○ **주기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 실태를 조사·공표**

- 대기업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진출·확장 시에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요

구분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내용
목적	<p>○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음</p> <p>- 중소기업이 잘 해오고 있거나 잘 할 수 있는 업종이 적합업종</p>
법적 근거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p> <p>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6. 12.></p>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 6. 12.></p>
지정 절차	<p>○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상시로 신청접수를 받아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도출되면 동반성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p> <p>-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p> <p>- 사업조정: 권고 → 공표 → 이행명령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p>
권고 유형	<p>○ 진입자제 → 확장자제 → 사업축소 → 사업이양</p>
지정 기간	<p>○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지정(최대 6년)</p>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프로세스와 지정 고려사항



주요 항목	세 부 항목
제도운영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 시장규모(출하량)
중소기업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효율규모(상시 근로자수 기준) · 1인당 생산성(중소기업 1인당 생산량 ÷ 대기업 1인당 생산량) ·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R&D 투입비중(필요시 투자 비중) · 경쟁력 수준 · 중소기업 중복보호 여부
부정적 효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선택권 및 소비자 후생 영향 · 협력사 피해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입 비중 · 대기업 수출비중

□ 고유업종 제도와 적합업종 제도의 비교

-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고유업종 제도가 1979년 도입되었으나 정책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2006년 폐지

〈고유업종 제도 폐지사유〉

폐지사유	고유업종 제도의 부정적 영향
① 기술품질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 주력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경쟁 과열로 수익성 악화 →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과 혁신성장 저하
② 중소기업이 고유업종 보호에 안주	→ 중소기업의 성장기피증(피터팬 증후군) 현상 증가 → 산업의 양극화 구조 고착
③ 신규 진입 규제로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 강화	→ 고유업종 영위 대기업과 진입하려는 대기업간의 갈등 → 시장경쟁과 산업혁신 약화
④ 시장개방과 글로벌화에 따른 보호효과 약화	→ 외국정부의 통상압박 증가 → 외국계 기업 및 수입제품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현상 발생
⑤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	→ 정부 주도 경제개발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 체제 전환 → 정부규제의 대대적 개혁과 철폐
⑥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화 추세에서 업종 구분 무의미	→ 융·복합 ICT기술의 혁신과 Value Chain의 변화로 업종간 경계 약화 → Total Solution 지향적 소비자 선호와 유통채널의 대두

□ 고유업종 제도와 적합업종 제도의 비교

○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에 따른 공백지대 해소위해 적합업종 제도 도입

-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이 확대되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 대두

〈고유업종 제도와 적합업종 제도의 비교표〉

구분	고유업종 제도	적합업종 제도
선정주체	정부(구 상공부)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지정분야	전통제조업 위주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중견기업 포함)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견기업 포함)
존속기간	제한 없음 (89년 졸업예시제 운용)	제한 있음 (예. 3+3)
품목범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8단위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최하단위를 감안하되,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
처벌규정	5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신고위반 등)	없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 334개 업종 신청, 적합업종 등 121개 합의·권고, 현재 53개 업종 품목 합의·권고 유지 중
(2011년 10월~2022년 3월)

- (유지) 합의·권고(53개): 적합업종 4개, 시장감시 1개, 상생협약 48개

〈합의·권고 현황〉

구분	신청접수 (a+b+c+d)	진행중 (a)	합의·권고(b)			해제 (c)	철회·반려 (d)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제조업	267	1	1	-	31	61	172
서비스업	67	6	3	1	17(18**)	9	31
계	334	7	4	1	48(49**)	70	203

* 사업조정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한 '노브랜드, MRO' 품목은 상생협약 품목에서 제외

** 재합의된 자동차단기대여 서비스업 중 카셰어링 부분은 별도 신청없이 최초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품목수는 동일하나 상생협약만 품목 추가

•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연도별 현황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요청 현황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 사실 공고

최초 권고년도	업태구분	업종·품목명
2011(37) *권고만료	제조(37)	골판지상자, 금형2종(프레스, 플라스틱), 유리2종(기타안전유리, 기타판유리가공품), 기타인쇄물, 김치, 단조7종(기타 비철금속, 기타 철강, 동, 보통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특수강), 두부, 막걸리, 맞춤형복, 생석회, 세탁비누, 아스콘, 어묵, 자동차재제조부품, 장류4종(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전통떡, 햄버거빵, 조미김, 순대, 원두커피, 주조6종(가단, 구상흑연, 보통강, 알루미늄, 특수강, 회)
2012(45) *권고만료	제조(45)	고압가스충전업6종(질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 아르곤, 수소, 산소), 기타 가공사, 다류5종(녹차, 홍차, 울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단무지, 도시락, 레미콘, 면류3종(국수, 냉면, 당면), 아르용접기, 앙금류, 옥수수유2종(원유, 정제유), 절연전선, DVR, LED조명기구, 공기조화장치3종(에어핸들링유닛, 팬코일유닛, 향온향습기), 냉각탑, 기타플라스틱용기, 주차기, 냉동·냉장 쇼케이스, 낙뢰방지시스템, 배전반2종(고압, 저압), 부동액, 부식억제제, 비디오도어폰, 송배전변압기, 아연분말, 유기계면활성제, 차량용블랙박스,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및 용기, 플라스틱병
2013(18) *권고만료	제조(3)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플라스틱봉투
	서비스(15)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음식점업7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2014(1) *권고만료	제조(1)	떡국떡 및 떡볶이떡
2015(4) *권고만료	서비스(1)	보험대차 서비스업
	제조(2)	목재펠릿보일러,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서비스(1)	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
2016(2) *권고만료	제조(1)	사료용유지
	서비스(2)	계란도매업, 문구소매업
2017(1)	서비스(1)	고소작업대임대업
2019(1)	서비스(1)	자동차단기대여서비스업
2022(1)	서비스(1)	대리운전업

NO	업종 명	등록일
26	문구소매업	2022-08-05
25	계란도매업	2022-01-11
24	보험대차 서비스업	2020-09-10
23	떡국떡 및 떡볶이 떡	2020-09-03
22	폐목재 재활용업	2020-08-13
21	도시락 류 제조업	2019-12-27
20	막걸리	2019-12-24
19	면류(국수, 냉면, 당면)	2019-12-23
18	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	2019-08-14
17	곡물제조업(메밀가루)	2019-06-10
16	떡류제조업(전통떡)	2019-04-08
15	빵류제조업(햄버거빵)	2019-04-08
14	두부	2019-04-01
13	앙금류	2019-03-27
12	어묵	2019-03-27
11	자동차 전문수리업	2019-03-21
10	장류제조업-고추장	2019-03-19
9	장류제조업-간장	2019-03-19
8	장류제조업-된장	2019-03-19
7	장류제조업-청국장	2019-03-19
6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2019-03-05
5	제과점업	2019-03-05
4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2019-03-04
3	자동판매기 운영업	2019-02-25
2	중고자동차판매업	2019-02-19
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2019-02-15

•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제도 관련 이슈와 쟁점



□ 적합업종 제도 관련 이슈와 쟁점

이슈	쟁점	
	비판 논리	지지 논리
사업규제·시장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업종 제도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업영역을 조정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업규제 자유경쟁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정부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시장 친화적 제도에 부합하므로 정부 규제로 보기 어려움 규제라면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함 자유시장 경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정책 중소기업의 독창성을 유지하여 잠재경쟁 강화로 시장경제 활성화 기여
재산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업종을 선정된 품목을 생산해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시적 제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보호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함으로써 불균형 해소
중견기업 포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견기업 억제정책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이나 프랜차이즈 시장은 대부분을 중견기업이 지배적 위치에 있어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높음 보호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외국계 기업 역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계 기업은 포함되지 않기에 역차별 문제 발생 및 형평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기업의 투자없이 브랜드 라이선싱에 의한 투자를 외국계기업으로 인식하여 오해 발생 → 사보텐(아워홈), 모스버거(미디어홀딩스), 호토모토(동원수산) 국내 대기업이건 외국계 대기업이건 동일하게 권고내용을 적용

□ 적합업종 제도 관련 이슈와 쟁점

이슈	쟁점	
	비판 논리	지지 논리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적용할 경우 WTO 위반 및 FTA 협약에 따른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포괄적 유보조항으로 취약계층 우대조치, 공공질서 유지 등을 취하는 것이 허용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 작음 동반위는 민간기구이며, 적합업종은 자율규제
산업경쟁력·글로벌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의 R&D 위축 및 투자감소로 산업경쟁력 약화 고위험 고비용의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미발달 혁신제품의 내수 판매 부진과 양산 미흡으로 해외시장 수출판매 가능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적 Fast-Follower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논리로 양극화 조장 부작용 초래 창의적 벤처기업의 혁신기술에 의한 산업혁신 간과 물량과 가격에 의존한 밀어내기 수출경쟁력의 한계
중소기업 보호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중소기업은 보호에 안주하여 자생력 배양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자구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필요 중소기업 경쟁력 기반 구축 병행 지원
소비자 선택과 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제품 접근성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폭 제약 산업전반의 고객센터 투자와 소비자만족 보장 미흡 (예: 중고차 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이 공급되어 소비자 선택폭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쇠락 차단하여 지역 경제·상권 침체 방지 (예: Gentrification)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완화하는 안전장치 적합업종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한정적(사업축소·이양 희소)이며 한시적(3년+3년)

□ 적합업종 제도와 소비자후생의 연관성

○ ‘대기업 제품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후생 감소?

- 반박 논리 -

- 대기업 제품을 완전히 영원히 배제하지 않음 → 적합업종은 한정적 한시적 조치
-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고품질에 저가격 → 대기업의 Marketing공세와 Channel장악에 의한 소비자 선택 호도

※ 중소기업의 Product Value <<< 대기업의 Brand Image

- 대기업이 해당 업종·품목을 장악할 경우 독과점력 강화에 따른 획일화와 비효율 → 생태계 다양성 파괴와 선택 제한
- 소수 대기업이 산업을 지배하며 진입장벽 강화와 담합 → 품질하락 가격인상으로 소비자후생 감소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몰락과 골목상권의 쇠퇴 → 일자리 감소와 서민경제 침체로 대중 소비자 피해

○ 즉시적·개별적 소비자후생 vs. 지속적·국민적 소비자후생

- 개인 소비자의 즉시적 후생과 전체 소비자의 장기적 후생이 대립될 수 있음

- 예) 1회 용품이 당장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원낭비, 쓰레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전체 사회 후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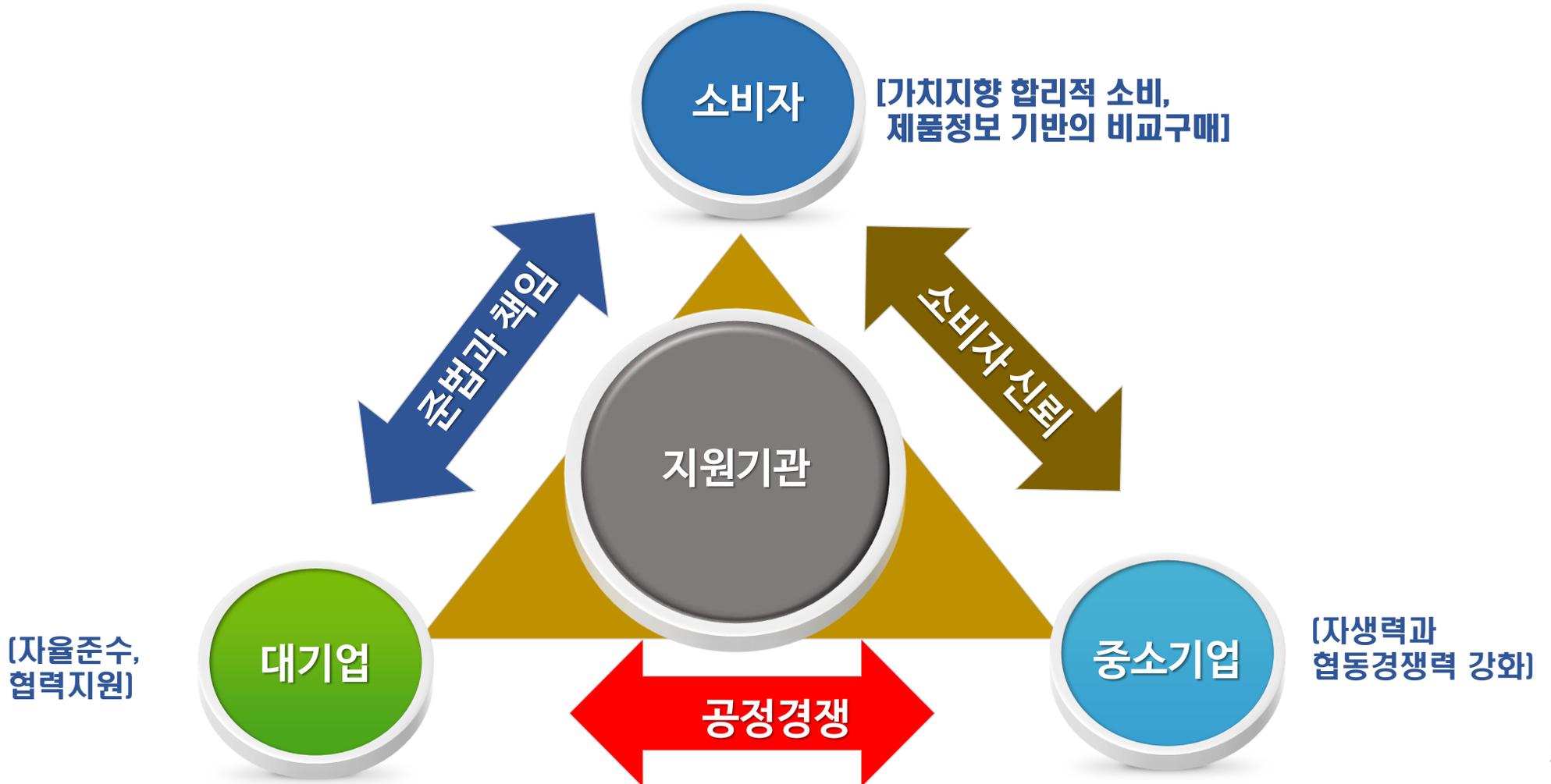
- 소비자후생의 핵심요인은 선택의 다양성, 제품의 품질, 합리적 가격

- 적합업종 제도 적용시점에는 소비자후생이 낮지만, 적용 후에는 소비자후생이 높아지는 것이 대전제

□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적 운용조건

○ 적합업종 적용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을 수행

- 대기업: 합의·권고내용 자율준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협력지원
- 중소기업: 개별 기업의 자생력 강화, 협·단체의 협동화로 공동사업 추진
- 지원기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지원, 공동사업의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 소비자: 제품가치 지향의 합리적 소비, 제품정보 기반의 비교구매, 소비자단체의 제품정보 공개 및 기업평가 기능





1 토론문 1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노용환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배경?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해 옴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고 보수-진보 정권에서 지속되어 온 것은 사회적 갈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접근방법?
 - 특수 사업영역에 속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의 정량적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기 쉬움
 -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임금 격차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역할을 필요로 함

-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난 10년 간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산업과 신상품의 출현, 플랫폼시장의 성장, 업종 간 융·복합화 촉진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적합업종품목 경쟁국의 반사이익 및 소비자 후생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이 보호의 틀에서 지대추구에 안주하지 않도록 유인책도 강구할 필요

〕 토론문 〕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영훈

-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동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명분으로 동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불분명함. 반면,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음. 유사한 제도인 고유업종 제도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미 2006년 폐지.
 - 특정품목에 대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임.

- 정치권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같이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여야,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
 -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2018년 대선 공약중 하나로 ‘협력이익배분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중소기업을 보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움.
 - 시장과 경쟁자가 급변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업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가져옴
 -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시작해 규모를 키워간 경우, 역설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 결국 성장보다는 현행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임. 국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을 경우, 수입업체나 외국계 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차별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기업 직원이 아닌 또다른 소상공인들이 규제대상임.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간의 대립임.
- 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가 될 수 밖에 없음.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비해 개별적인 이익규모가 작은 소비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힘 역시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음
-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퇴출당하는 일이 시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극대화됨
- 미중 무역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자율원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혁신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법-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병행되어야 할 것임.

